

#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

2009. 6. 16 제정

## 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의전원”이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,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교육목표) 의전원은 의료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·연구하고, 의료 실무분야에서 탁월한 여성리더십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의료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 (과정) 의전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둔다.

1. 의무석사학위과정
2.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

## 제 2 장 조직

제 4 조 (행정조직) ①의전원에 의학전문대학원장(이하 “의전원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 의전원장은 의전원을 대표하며, 총장의 명을 받아 의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의전원에 교무행정, 학사행정, 학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무부를 둔다. 교무부에는 부원장을 두며, 사무직원과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의전원에 연구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둔다. 연구부에는 부원장을 두며, 사무직원과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

④의전원에 학생복지증진, 생활 및 진로상담,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 과정 학생의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생부를 둔다. 학생부에는 부원장을 두며, 사무직원과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

⑤의전원에 임상실습, 국가고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상교무부를 둔다. 임상교무부에는 부장을 두며, 사무직원과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

⑥의전원에 기획홍보, 대외협력, 정보통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부를 둔다. 기획부에는 부장을 두며, 사무직원과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

⑦의전원에 교육과정 연구개발, 리더십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학교육부를 둔다. 의학교육부에는 부장을 두며, 사무직원과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

⑧의전원에 입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관리부를 둔다. 입학관리부에는 부장을 두며, 사무직원과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5 조 (교실) ①의전원 의학과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실을 두고 각 교실에 주임교수를 둔다.

②교실 주임교수는 의전원장의 명을 받아 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위원회) ①의전원에 교육과정위원회, 교수업적평가위원회, 의사국가시험위원회, 발전기획홍보위원회, 입학관리위원회 등을 둔다.

②전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7 조 (연구소) ①의전원에서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를 운영한다.

②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연구소장과 부소장을 둔다.

③연구소장은 연구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원과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④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.

### 제 3 장 의무석사학위과정

제 8 조 (입학시기) 의전원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제 9 조 (입학전형의 구분) 의전원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제 10 조 (입학자격) ①의무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.

1. 국내외 4년제 이상의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하거나 고등교육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3. 당해연도 의학교육입문검사(MEET)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할 예정인 자

4.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(TOEFL, TOEIC, TEPS에 한함)을 치르고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

②의무석사 학위과정에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하려는 자는 전항의 자격 외에 의전원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 11 조 (입학전형) ①의전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 심사와 심층면접시험 등으로 시행한다.

②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2 조 (휴학)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다만,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다.

②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. 다만,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.

③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한다.

제 13 조 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.

1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2.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3. 재학기간 중 유급 3회를 초과한 자
4. 재학년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5.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
제 14 조 (수업년한 및 재학년한)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하고, 재학년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15 조 (교과과정) 의전원의 교과과정은 [별표 1]과 같다

제 16 조 (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) ①의무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②의무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전공과목 181학점으로 한다.

제 17 조 (학기당 취득학점) 의무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[별표 2]와 같다.

제 18 조 (학점 인정의 예외) ①의무석사학위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②의무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 19 조 (유효성적과 수료성적)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6분의 5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C<sub>-</sub> 이상 또는 S(합격)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,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2.3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20 조 (유급) ①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1과목 이상 F학점을 취득하거나, 학기 평점이 2.30 미만인 경우 유급시킨다.

②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유급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전공과목 중 C<sup>+</sup> 이하 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학위의 수여) 의무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#### 제 4 장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

제 22 조 (입학정원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의무석사학위과정 정원 내에서 2명 이내로 한다.

제 23 조 (입학자격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.

1.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추고 의무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

2. 학부과정 이수학점 전(全)학년 평균평점이 4.30만점에 3.50점(4.00만점에 3.25점, 4.50만점에 3.66점) 이상인 자
- 제 24 조 (입학전형) ①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입학전형은 의무석사학위과정 최종합격자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복합기술면접시험 등으로 시행한다.
- ②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 25 조 (휴학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에서는 의무석사학위 과정은 6학기를, 의학박사학위 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- 제 26 조 (수업년한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7년으로 하며, 각 과정별로 의무석사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, 의학박사과정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.
- 제 27 조 (교과과정) 의무석사 1, 2학년 과정 2년, 의학박사 과정 3년, 의무석사 3, 4학년 과정 2년 순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 28 조 (학생의 소속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학생의 소속은 졸업시까지 의전원 소속으로 한다.
- 제 29 조 (학점의 취득 및 인정) ①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중 의학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하며, 의무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7학점까지 인정하고, 의학박사과정에서는 일반대학원 교과목으로 33학점을 취득한다.
- 제 30 조 (논문제출년한 등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13년 이내에 의무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고, 의학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제 31 조 (학위의 수여) ①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학생이 의무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, 의학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(M.D.-Ph.D)를 수여한다.
- ②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학생이 의학박사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의무석사과정만을 수료한 경우에는 의무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- ③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학생이 의무석사 1, 2학년 과정과 의학박사과정만 마치고 의무석사 3, 4학년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의전원 의과학자 운영위원회와 본교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학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- 제 32 조 (장학금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의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혜 받은 장학금을 지급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 33 조 (준용 규정) 의무석사/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, 학기당 취득 학점, 휴학기간, 등록금 등은 의무석사과정은 의전원 의무석사과정과, 의학박사과정은 일반대학원 의학박사과정과 동일하게 한다.

제 5 장 보칙

제 34 조 (학사운영규정 등 제정) 의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사운영내규 및 기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35 조 (준용규정) 학기, 수업일수, 휴업일,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9. 6. 16 제정)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(제15조 관련)

의무석사학위과정	복합학위과정
전공과목: 181학점	가. 의무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: 181학점 나. 의학박사학위과정 전공과목: 60학점 (의무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27학점까지 인정)

[별표 2] 의학전문대학원 취득학점(제17조 관련)

등록 학기	학기당 최대 취득학점
1	36
2	36
3	33
4	33
5	30
6	30
7	25
8	25